

학교 폐기물처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8가단000000[1심] 2019나00000[2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 청구
원고	인천광역시 대표 교육감	피고 (피고보조참가인)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○○○ (주식회사 ○○ 대표 ○○○)
판결선고일	[1심]2018. 11.15. 원고승소 [2심]2019. 10.23. 원고승소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고는 2001.5.29. 피고에게 인천 ○○○구 ○○○동 ○○○-○외 각 토지(합계면적 ○○,○○○㎡)를 0,000,000원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수하되, 특약조건(제1항)으로 ‘동 부지는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, 만약 학교증축공사 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즉시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.’고 정하였음 ○ 2017. 9.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지하에서 다량의 폐콘크리트를 발견하고 2017.10.17. 피고에게 ‘이 사건 특약에 의거 2017.10.27.까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‘채권의 시효 소멸로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’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소송을 제기함 		
주문 (2심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주문과 같다.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심에서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,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(2017.11.3.)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바,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. 2. 23. 이 사건 소송 제기하였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 ○ 사실 입증에 관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2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진행된 학교증축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000.00톤이 발견되었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0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○ 매매계약서제5조(특약조건)에 대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매계약 무렵이 아닌 향후 학교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약정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함 -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조건(제1항)에 명시된‘증축공사’는 신축공사와 구분하여 기존의 건물에 부가하는 형태의 건축으로 봄이 타당함 - 신축이 예정된 학교건물(○○○)이었다면 ‘만약’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. 		

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